■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14.10.15.>

습득물(매장물) 소유권 취득 통지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
습득 사항	일 시		장 소	
	품 명			
습득자	성 명		전 화 번 호	
	주 소		생 년 월 일	
점유자	성 명		전 화 번 호	
	주 소		생 년 월 일	

「유실물법 시행령」 제5조 및 「민법」 제253조에 따라 귀하께서 습득물(매장물)의 소유권을 년 월 일 자로 취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년 월 일

○○ 경찰서장 (인)

귀하

안내말씀

1. 점유자 외에 실제의 습득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은 점유자와 실제의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 취득합니다.

2. 소유권을 취득한 후 3개월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합니다.

3.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「유실물법」 제3조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